

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 
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제안설명**

-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이효원 ·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 
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이새날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‘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해당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,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과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- 첫째, 조례 제17조 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을 현행화하고 조례 제20조 제3항의 용어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.

-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기존의 “전대(轉貸)”라는 표현을 “사용·수익”으로 변경하여, 법령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였습니다.
-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일치시키고,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 
감사합니다.